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원자력안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평가기준일(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) 이전으로 앞당겨 차기 10년간의 원전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10~5년 전까지로 변경하여 규제기관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고 설비개선 등의 개선사항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시설(이하 ‘원자로시설’)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(안 제36조제2항 개정)

- 1)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

나.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(안 제36조제4항 개정)

- 1) 제36조제4항에 따라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

다.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의 유효성 확인 평가 보고서 제출(안 제36조제5항 신설)

- 1)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의 유효성확인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

라.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의 유효성 확인 평가 방법(안 제37조제4항 신설)

- 1) 유효성 확인 평가보고서 작성 시 제출한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 중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함

마. 유효성 확인을 위한 평가 시 기술기준(안 제38조제2항 개정)

- 1) 유효성 확인 시에도 계통·구조물·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고, 방사성환경 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함

바. 유효성 확인을 위한 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(안 제39조제1항 개정)

- 1) 유효성 확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

사.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(안 제104조의2제2항 개정)

- 1)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나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2항 중 “평가기준일부터”를 “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”로, “이내”를 “전까지의 기간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포함한다”를 “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”로, “5년 전부터 2년”을 “10년 전부터 5년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3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.

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6조제4항”을 “제36조제4항 및 제5항”으로, “포함하여야”를 “포함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의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평가결과 중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.

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6조제4항”을 “제36조제4항 및 제5

항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1항 중 “제36조제2항”을 “제36조제2항 및 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04조의2제2항 중 “날(이하 “평가기준일”이라 한다)”을 “날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”으로, “이내”를 “전까지의 기간 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일 당시 제36조제2항 및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보고서의 제출시한을 경과하였거나, 제출시한까지 2년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과 종전 규정에 따른 제출시한 중 빠른 날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(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일 당시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제출시한을 경과하였거나, 제출시한까지 2년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는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) ① (생 략)	제36조(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평가보고서는 원자로시설마다 별도로 작성하되,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<u>평가기준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</u>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</u> ----- ----- <u>전까지의 기간</u> <u>내</u>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(이하 “계속운전”이라 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(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)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<u>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</u> 내에 평가보고서를 <u>제출하여야</u>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</u> ----- ----- <u>10년 전부터 5년</u> ----- ----- <u>제출해야</u> -----.
<u><신 설></u>	⑤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른 평

⑤ (생 략)
제37조(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) ① (생 략)
②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.
1.·2. (생 략)
③ (생 략)
<신 설>

제38조(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) ① (생 략)
②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해

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3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평가결과와 유효성 확인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.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제37조(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36조제4항 및 제5항-----

----- 포함해야 -----.
1.·2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의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평가결과 중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.

제38조(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36조제4항 및 제5항-----

서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. 1. · 2. (생 략) 제39조(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의 심사처리기간) ① 위원회는 <u>제36조제2항에</u> 따른 평가보고 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,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는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 제104조의2(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) ① (생 략) ②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건 설·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 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보 고서를 운영개시일부터 매 10년 이 되는 <u>날(이하 “평가기준일”</u> <u>이라 한다)</u>부터 1년 6개월 <u>이내</u> 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	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제39조(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의 심사처리기간) ① ----- <u>제36조제2항 및 제5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04조의2(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</u> <u>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</u>---- ----- <u>전까</u> <u>지의 기간 내</u>-----.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2) 397 - 7264